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1. 심시결과

- 가. 제출일자 : 2000년 11월 7일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0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0년 11월 13일)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이 현 숙)

가.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제5조 ②항 및 동조례 제6조 ②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정년이 시설장 57세, 보육교사 55세로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학기가 8월 31일과 익년 2월 말일에 종료되어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이 학기중에 있을 경우 보육의 일관성이 결여되며 영·유아동들에게 심적 상처를 주게 되며,
- 보육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인정하고 보육아동의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한편,
- 맡겨진 보육아동을 졸업시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람으로 아는 보육아동 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정년일을 학기말로 지정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 수탁시설장의 정년퇴직일을 상반기는 8월 31일에 하반기는 다음해 2월 말일에서 행하기로 규정함 (안 제5조제2항)
- 보육교사의 정년퇴직일을 상반기는 8월 31일에 하반기는 다음해 2월 말일에 시행하기로 규정함 (안 제6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화순)

- 본 조례개정안은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에 설치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개정할 내용은 수탁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학기 중에 교체될 경우 시설의 운영관리 및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에 연속성이 결여되므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탁시설 종사자의 정년퇴직일을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상반기 8월 31일, 하반기는 다음해 2월 말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현재 교육공무원 정년퇴직규정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정년퇴직일)에서는 :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학기)에서도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에 "수탁시설의 종사자 정년 퇴직일을 상반기 8월31일, 하반기는 다음해 2월 말일로 한다"라는 신설 조항은

현행 교육공무원 정년퇴직 규정에 맞추고, 보육아동들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자긍심을 주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1999. 9. 11. 본 조례개정시 부칙 제2항 『수탁시설장과 보육교사 정년에 관한 경과 조치』에서는 "본 조례 시행 전 위탁약정을 체결하여 정년이 남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 위탁약정 만료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화정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이 2000년 11월 24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탁시설장에 대한 공개 채용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만료기간이 임박하여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사항 : 없음